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# 목차

목차	2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	3
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?	3
구비서류	3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	3
감리 공사	3
감리원 배치현황 신고(30일 이내)	3
감리결과 보고서 제출	3
관련서식 다운로드	4
수수료	4
처리절차	4
대상공사	4
관련법령	4
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	5

**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?**

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

## 구비서류

### 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

-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
-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
- 건축허가서 사본 1부
-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

### ② 감리 공사

-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
-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
-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
-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
-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(재)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
-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

### ③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(30일 이내)

- 감리원 배치현황(신고서, 변경신고서) 1부

### ④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

-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
-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
-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
-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
-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(재)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
-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

## 관련서식 다운로드

항목	다운로드	항목	다운로드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	 hwp 다운로드	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	 hwp 다운로드
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	 hwp 다운로드	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	 hwp 다운로드
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합성 평가결과서	 hwp 다운로드	감리원자격증	 hwp 다운로드
위임장	 hwp 다운로드	감리원 배치현황 (신고서, 변경신고서)	 hwp 다운로드

## 수수료

건축물 연면적	검사 수수료	재검사 수수료
500㎡미만	20,000원	검사 수수료액의 50%
500㎡이상 1,000㎡미만	30,000원	
1,000㎡이상 3,300㎡미만	40,000원	
3,300㎡이상	60,000원	

※ 유의사항 :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(수수료 면제)

## 처리절차

1. 발주자 : 허가건축물 사용전 검사 신청
2. 민원봉사과 : 민원행정 처리시스템 등록 (접수 및 담당자 지정) 후 인계
3. 총무과 : 검사업무처(시공현장 확인결과 통보) 필증발급
4. 발주자 : 필증수령

※ 유의사항 : 발주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연락처 명기 / 시공현장 확인후 검사필 스티커 부착

## 대상공사

- 연면적 150㎡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, 방송공동수신설비,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,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공사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

## 관련법령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36조(공사의 사용전검사 등) 제① 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(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)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,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

-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자: 1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
-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·감리자: 500만원이하 벌금
- 공사업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 시공: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 이하 벌금
- 공사업등록(수첩)을 대여 또는 사용한자: 3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- 정보통신공사사업법령 위반 공사업자/기술자: 업무정지, 영업정지, 등록취소 등

GANGJIN

***Web Contents***

